물리적 업무지침

개정이력

|  |  |  |  |
| --- | --- | --- | --- |
| No. | 개정 사유 및 내용 | 개정일자 | 담당자 |
| 1.0 | 제정 | 2024.04.05 | 최철훈 |

목차

[목적 3](#_Toc13593106)

[범위 3](#_Toc13593107)

[제1조 (보호구역 지정) 3](#_Toc13593108)

[제2조 (보호구역 대책) 3](#_Toc13593109)

[제3조 (보호설비 운영) 5](#_Toc13593110)

[제4조 (정보시스템 배치) 5](#_Toc13593111)

[제5조 (출입통제) 5](#_Toc13593112)

[제6조 (보호구역내 작업) 6](#_Toc13593113)

# 목적

본 지침은 주식회사 제타큐브(이하 '회사')의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및 작업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자산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범위

회사의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물리적인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 제1조 (보호구역 지정)

1. 비인가자의 물리적 접근 및 각종 물리적, 환경적 재난으로부터 주요 설비 및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가. 접견구역: 로비, 상담실 등 외부인이 별다른 출입증 없이 출입이 가능한 구역

나. 제한구역: 사무실, 회의실 등 비인가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출입통제 장치가 설치된 장소로 출입 시 직원카드가 필요한 구역

다. 통제구역: 전산실 등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고 별도의 출입통제 및 CTTV가 설치된 장소로 출입 시 직원카드가 필요한 구역

# 제2조 (보호구역 대책)

1. 제한구역에 대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이 수립 이행한다.

가.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 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한다.

나. 외부인 방문 시 직원과 함께 이동한다.

2. 통제구역에 대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이 수립 이행한다.

가. 통제 구역에는 정보보호 담당자가 승인한 인원 외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나.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 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한다. 만약, 출입 통제장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쇠를 통해 관리한다.

다.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한다.

3. (법)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법)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률 요구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법)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설치목적이 법률 요구사항(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5의2. (법) 공개된 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5의3. (법) 공개된 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사람(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할 경우, 불빛/소리/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6. (법)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률 요구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7. (법)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방법과 동일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8. (법)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개보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1인 1계정, 백신설치, 패치, 접근권한 최소, 접속기록 점검/백업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9. (법)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CCTV를 임의 조작(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하지 못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0. (법)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무위탁시 위탁받는자의 명칭 및 연락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 (보호설비 운영)

1. 통제구역의 물리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선택적으로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가. 온습도 조절장치: 항온 항습기 또는 에어컨을 설치하여 적정 온습도를 유지한다.

나. 화재감지 장치: 화재감지장치를 천장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 소화설비 장치: 소화기 또는 자동 소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라. 누수감지 장치: 누수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UPS: 통제구역내 중요 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용량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바. 비상발전기: 통제구역내 중요 시스템의 지속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게끔 비상발전기를 운영한다.

사. 이중전원선: 통제구역내 중요 시스템의 안전한 전원공급을 위해 전원선을 이중으로 운영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등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전산장비에 연결된 전력과 통신 케이블은 절단 등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매설하고, 매설이 어려울 경우 보호용 파이프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 제4조 (정보시스템 배치)

1. 네트워크 장비와 그외 정보시스템은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배치한다.

2.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제5조 (출입통제)

1. 통제구역 내 주요 설비 및 시스템의 접근은 인가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2. (법)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 보관장소가 존재할 경우에는 인가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3.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의 출입 및 접근 이력을 남길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제6조 (보호구역내 작업)

1. 유지보수 등 주요 설비 및 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가. 인가받은 사용자만이 통제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외부자가 통제구역에 접근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관련 내부 담당자가 동행을 하여야 한다. 단, 내부 담당자가 동행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고정형 CCTV 등으로 동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통제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회사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USB 등 이동형 저장매체는 통제구역에 대한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3. 회사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USB 등 이동형 저장매체는 제한구역에 대한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단, 개인용 스마트폰의 경우 예외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4. 정보보호담당자가 통제구역 내 출입 및 접근 이력에 대한 검토를 반기별로 실행한다.

5. 외부인이 통제구역에 접근 시 방문목적(작업에 대한 기록)을 출입관리대장에 남기고, 이를 정보보호 담당자가 월1회 검토한다.

6. 보호구역 내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현황을 출입관리대장에 남기고, 이를 정보보호 담당자가 월1회 검토한다.